

2016 감사사례집



사람 중심 관악특별구

관 악 구

- 목 차 -

1. 예산·회계 분야		2
2. 보건·소송 분야		22
3.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분야		38
4. 세무 분야		46
5. 동 행정 종합감사 분야		59
6. 제도개선·수범사례		112
7. 관련 규정		134

1. 예산·회계 분야

2016 감사사례집

1. 예산 · 회계 분야

감사사례

1.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3
2.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 소홀	4
3. 세출예산 과목 적용 부적정	5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소홀	6
5. 공용물의 개인 명의 적립	7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8
7. 직원 국내여비 지급 소홀	9
8. 신용카드 통장 이자수입 세입 미 조치	10
9. 물품 관리대장 미 등재	11
10. 회계서류 작성 소홀	12
1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 준수	13
12. 대가의 지급 처리 부적정	14
13. 세출예산(급량비) 집행기준 미 준수	15
14. 일반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16
15. 특정업무경비 지급규정 준수 소홀	17
16.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18
17. 지출 및 지급원칙 위반	19
18. 관외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20

2016 감사사례집

1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적사항

- ○○○○과 등 4개 과는 2012. 12. 13.부터 2014. 12. 19.까지 총 ○○건 0,000,000원의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1인 1식 7,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건 000,000원), 특근매식비 산출내역 없이 지출(○○건 0,000,000원)하는 등 급량비의 적정 지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134조

☐ 지적사항

- ○○○○과 등 4개 과는 2012. 12. 21.부터 2015. 3. 12.까지 총 ○○건 00,000,000원의 물품을 제작·구매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본 견적서와 이미 폐업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시장가격조사 및 견적가격 비교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

세출예산 과목 적용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지적사항

- ○○○○과는 2013. 1. 31.부터 2015. 3. 25.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편발송 비용을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각종 강사료나 직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인 비용을 기타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비용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총 ○○건 0,000,000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하였으며,
- ●●●●과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족관 청소 및 관련 물품 구입비 등을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내방인용 음용수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직원 보수교육비를 사무관리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건 0,000,000원을 예산과목과 맞지 않게 적용하여 집행하였고,
- ◎◎과는 2013. 6. 28.부터 2014. 7. 4.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커피, 종이컵 등 물품구입비를 부서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총 ○건 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총 ○건 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분소 화장실 부속 구매교체를 위한 비용 00,000원을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소홀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적사항

- ○○○○과 등 3개 과는 2013년 7월과 12월, 2014년 5월과 6월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함에도, ○명에 대하여 총 ▲건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여 총 0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2016 감사사례집

5

공용물의 개인 명의 적립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 지적사항

- ●●●●과 등 3개 과는 2014. 7.부터 2014. 12. 까지 총 ○회에 걸쳐 GS슈퍼마켓 등에서 발생한 적립포인트 0,000점을 개인 명의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 지적사항

- ○○○○과는 소속 상근직원이라 볼 수 없는 동 주민센터 직원(△△, ▲▲) 경조사비로 총 ○건 0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2016 감사사례집

7

직원 국내여비 지급 소홀

☐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 지적사항

- ●●●●과는 직원(▲▲▲)의 2013년 7월분 여비를 지급하면서 2013. 7. 5. 4시간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 7. 11. ○○관련 업무로 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중복으로 ○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총 0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2016 감사사례집

8

신용카드 통장 이자수입 세입 미 조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 지적사항

- ○○○○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카드 결재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00,000원을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세입)

- 재정상 시정(세입)

2016 감사사례집

9

물품 관리대장 미 등재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0조, 제61조

☐ 지적사항

- ○○○○과는 2013. 8. 2.와 2013. 8. 23. 체력측정실 파티션과 레이저프린터 등 총 ○건 0,000,000원의 물품을 구매한 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 ◎◎과는 2013. 8. 7. 임상병리실 바코드프린터 구매비 000,000원을 자산취득 비로 구입한 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2016 감사사례집

10

회계서류 작성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146조, 제14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13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적사항

- ▲▲1, 2과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건에 대하여 금액오기, 날인누락, 지출일자 및 지급명령번호 미기재, 이체처리 결과를 누락하였으며 물품 수리시 수리내역 미첨부, 물품구매시 매출전표만 첨부하고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이 표시된 구매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품의 하였으며, 계약일자, 납품기한, 검사일 미기재 하는 등 물품검수조사 작성 미흡 등 회계서류 구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 준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적사항

- ▲▲1과는 2012. 10. 5.부터 2015. 1. 13.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기관의 기본운영경비나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가 아닌 소속직원 격려품 지급, 직원 발령자 방문 등으로 총 ○건 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 ▲▲2과는 2012.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원 발령자 방문, 부서보조업무자 격려로 총 ○○건 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어야 할 부서명함제작 등 ○건 00,000원에 대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2

대가의 지급 처리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시행령」 제67조

☐ 지적사항

- ▲▲1과는 ‘2013.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용 프랭카드 구매’를 집행하면서 계약 상대자(□□□기획)가 2013. 9. 9.일에 계약금액 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기한이 5일이 지난 2013. 9. 27.일에 처리하는 등 총 ○건에 대하여 최소 3 일에서 최대 5일까지 지연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3

세출예산(급량비) 집행기준 미 준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적사항

- ▲▲1과는 2013. 8. 16.일「2013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급량비 지급 (000,000원)」을 신용카드(현금지출증빙)로 처리하지 않고 지급조서에 날인 후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4

일반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158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5

☐ 지적사항

- ▲▲2과는 2012. 10. 23.일 일반과세자인 물품구매업자에게 000,0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무과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5

특정업무경비 지급규정 준수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적사항

- ▲▲2과는 휴직(요양, 육아 등)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지 않아 특정업무경비 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추가지급)

2016 감사사례집

16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적사항

- ▲▲▲과는 당초 직원 MT경비로 포상금 0,000,000원을 교부 받고, 이 중 2013. 1. 18.일 우수부서 선정 직원 간담회비로 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총 ○건 000,000원을 집행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17

지출 및 지급원칙 위반

□ 관련규정

- 「서울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53조

☐ 지적사항

- ▲▲▲과는 2012. 4분기 우수부서 시상금 000,000원을 교부받아 2013. 2. 1일 직원 MT 숙박비(■■■■콘도-개인선택적 복지 포인트 활용) 및 차량 운전자 수고비용으로 지출하면서 대금을 정당한 채주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지 않고,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 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8

관외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

☐ 지적사항

- ▲▲▲과 관외 출장자 총 ○○명은 2014. 2월부터 2015. 9월까지 상습체납차량 단속 및 견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외 출장을 하면서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정산서류 미제출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건 0,000,000원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 보건 · 소송 분야



2016 감사사례집

2. 보건 · 소송 분야

감사사례

1.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 행정처분 미 이행	23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24
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급 소홀	25
4. 보건소 진료비 세입 소홀	26
5.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 대출 영업장 확인 소홀	27
6.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 소홀	28
7.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소홀	29
8. 소송업무 사무전결처리규정 준수 소홀	30
9. 소 취하 후 소송비용 회수처리 소홀	31
10. 승소사건 소송비용 추심업무 처리 소홀	32
11.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	33
12. 소송수행절차 미 준수	34
13. 법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납부 관련 업무개선 소홀	35
14. 소송비용 회수 관련 지도·감독 소홀	36

2016 감사사례집

1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 행정처분 미 이행

☐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8조, 제59조

☐ 지적사항

- ○○○○과는 2012년 소독업 종사자 미 이수자 명단(▲명)이 통보되었음에도 시정 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소독업 종사자 위생교육 미 이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 관련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모자보건사업 안내」

☐ 지적사항

- ●●●●과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을 접수·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징구하는 등 업무처리 상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징구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급 소홀

☐ 관련규정

-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지적사항

- ○○○○과는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확인을 ▲건 누락하거나 최초 의료비지원 신청자에게 의사진단서를 징구하지 않고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 또한, 보건소 등록일(지원 신청일)이전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음에도 소급하여 지원하거나 계산착오로 의료비를 과다·과소 지급하는 등 의료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추가지급)

2016 감사사례집

4

보건소 진료비 세입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 지적사항

- ○○과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 보건분소에서 진료비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진료비 중 카드로 결재된 수입금 중 총 ○○건 000,000원을 금고에 세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하였으며, 금고에 세입 처리된 진료비 중 총 ○건 00,000원이 과다 입금되어 결과적으로는 00,000원의 세입을 누락하는 등 진료비 세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세입)

2016 감사사례집

5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 대출 영업장 확인 소홀

☐ 관련규정

-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 지적사항

- ◆◆과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대출영업장 2개소(□□보쌈, ○○○황태촌)에 대하여 대출 3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6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 소홀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지적사항

- ■과는 2012년과 2013년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자 ○○명에 대한 과태료를 적시에 부과하지 않아 그 중 ○명(과태료 : 0,000,000원)에 대하여 시설물 멸실 등에 따른 영업소 폐쇄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 2014년 11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및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자 ○명에게 과태료 000,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위생교육 미 이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7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소홀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적사항

- ■■과는 행정처분한 ‘●●●순대국’ 등 6개 업소로부터 이행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8

소송업무 사무전결처리규정 준수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9조, 제10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5조

☐ 지적사항

- ▲▲1과 등 5개 과는 행정소송 20**구합**** 「○○○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외 △건에 대하여 준비서면 작성시 ○○회, 소송대리인 선임의뢰시 ○회, 답변서 작성시 ○회, 항고 및 재항고 방침 수립시 각 ○회에 걸쳐 기획예산과장의 사전 심사와 소관 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9

소 취하 후 소송비용 회수처리 소홀

☐ 관련규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4조

☐ 지적사항

- □□□□과는 행정소송 201*구합****, 201*누**** 「○○○○○○자격정지등처분취소」 사건 수행시 2015. 1. 16. 상대방(원고)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소송비용액 0,000,000원(추정액)에 대하여 법원으로 확정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 ◇◇◇◇과는 민사소송 201*카합****, 201*라**** 「○○○○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사건 수행시 2014. 12. 30. 상대방(원고)의 항고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소송비용액 000,000원(추정액)에 대한 회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과는 민사소송 201*가단***** 「○○이득금반환」 사건 수행시 2012. 9. 26. 상대방(원고)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으로 소송비용액 0,000,000원(추정액)에 대한 회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0

승소사건 소송비용 추심업무 처리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조
-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서울고등검찰청, 2013. 1. 17 통보)」

□ 지적사항

- ■■■■■과는 민사소송 201*가합***** 「○○배상청구」 사건 수행시 2014.10.16. 우리 구 승소 판결 선고로 소가 종결되었음에도 소송비용액 0,000,000원(추정액)에 대한 소송비용액 회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과는 민사소송 201*가단***** 「○○금」 사건 수행시 2014.9.17. 승소 판결 선고 후 상대방(원고)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0,000,000원(추정액)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행정소송 201*구합***** 외 2건 「㉠㉠시설물 도로점용허가취소 처분취소」 사건 수행시 2014.7.10. 승소 선고 후 서울고등검찰청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0,000,000원에 대한 확정 결정 신청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으로 소송비용액 회수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1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 지적사항

- ●●●●과 등 2개 과는 민사소송 201*가소***** 「○○○○○반환」 사건 외 3건을 수행하면서 우리 구 패소 선고 후 패소원인분석과 승소 선고 후 결과에 대한 소송진행사항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송 종료 후 소송대리인 변호사로부터 소송 문서 일체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 ◇◇과는 행정소송 201*구단***** 「○○○부과처분취소」 사건 수행시 2014. 11. 27. 우리 구 패소로 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00,000,000원의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함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식품위생과징금 감액결정결의(◇◇과-81*, 201*.*.*)’로 갈음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2

소송수행절차 미 준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0조

☐ 지적사항

- ○○○○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기된 행정소송을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면서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항고여부 및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데도 총 ○○○회에 걸쳐 소송수행 결정 방침없이 서울고등검찰청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어 지휘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3

법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납부 관련 업무개선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69조
- 법원 환급금 세입조치 관리 철저(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29095, 2014. 12. 30)

☐ 지적사항

- ○○○○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인지대·송달료 납부시 개산급으로 예산에 의한 지출을 하지 않았으며,
- 소송수행자(공무원·변호사)의 사비로 우선 납부하게 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소송비용의 정당한 채주가 아닌 이에게 개산급이 아닌 확정급으로 인지대·송달료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4

소송비용 회수 관련 지도·감독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34조

☐ 지적사항

- ○○○○과는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등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도, 소송 주관부서장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서울고등 검찰청장 및 제1심 법원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 누락을 방지하고 회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총 ○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3.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분야

2016 감사사례집

3.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분야

감사사례

1. 예방행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관리 소홀	39
2.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40
3. 공무원 출장여비(식비) 이중 지급 부적정	41
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42
5. 부동산 등기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43
6. 신용카드 발급상황 현행화 소홀	44

2016 감사사례집

1

예방행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과 외 22개 부서(동)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모니터링 된 내역 중 0,000건(전체 39.6%)을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담당자가 입력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2016 감사사례집

2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적사항

- ○○○○○○에서는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없는 김■■■■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2013. 2. 2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0,000원 결재하였으며, 신용카드사용 의무적 제한 업종(○○호프)인 ▲▲▲포차, 호프에서 2015.6.27. ‘●●동 주민센터 근무직원 격려’를 위하여 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2016 감사사례집

3

공무원 출장여비(식비) 이중 지급 부적정

☐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자치부)」

☐ 지적사항

- □□□□□과에서는 2015.4.14 ■■■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벤치마킹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비 정액분(2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푸드빌푸드(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벤치마킹 참석직원 간담회비 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식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2016 감사사례집

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0조

☐ 지적사항

- ▲▲▲과에서는 2014.12월 ◇◇과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2015.4월 청백-e시스템에 모니터링 된 ○○동 14**-*(○○○), □□동 16**-*(△△△)불법건축물 등 총 ○건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해지 된 것으로 오인하여 취득세를 미부과하였으나, 건축물 대장 확인결과 대장 상 표기내역 변경만 있을 뿐 위반행위가 유지되어 취득세 부과사유가 존재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5

부동산 등기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 「지방세법」 제10조

☐ 지적사항

- ☞☞과에서는 2014. 9. 17. 청백-e모니터링 내용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2조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미산정으로 과태료 미부과 대상임”으로 일괄 답변하였으나,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아래 ○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6

신용카드 발급상황 현행화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적사항

- ◆◆과에서는 각 부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규, 카드 분실 및 재발급 상황이 발생되면 3일 이내에 발급 상황을 통보받아 신용카드 발급 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하나,
2015. 7월말 기준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신용카드현황(○○○건)과 전 부서에서 제출한 신용카드 현황(☆☆☆건)이 일치하지 않는 등 2015.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4. 세무 분야



2016 감사사례집

4. 세무 분야

감사사례

1.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소홀	47
2. 자치법규 개정 소홀	48
3. 가설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49
4. 증축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50
5. 대수선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51
6. 위법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52
7.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	53
8. 대수선 건축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누락	54
9. 가설 건축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누락	55
1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56
11.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소홀	57

2016 감사사례집

1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134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지적사항

- ▲▲▲과는 2012. 12. 2.일 ○○인쇄소(대표 ○○○)와 명함구매(계약금액 00,000원)를 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시 계약대상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으면서 폐업된 업체의 비교 견적서를 함께 제출받아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물품구매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

자치법규 개정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 지적사항

- ▲▲▲과는 현재까지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위 규칙의 근거규정이 지방세법 제64조로 잘못 명시되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2016 감사사례집

3

가설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1조

☐ 지적사항

- ▲▲▲과 가설 건축물 취득세 부과담당 총 ○명은 2012. 1월부터 2015. 9월까지 가설건축물 관리부서(□□과)로부터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서울시 관악구 ●●동 산 **-*외 ○필지 (주)□□□□건설에 대한 취득세 000,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건 0,000,000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4

증축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1조

☐ 지적사항

- ▲▲▲과 증축 건축물 취득세 부과담당 총 ○명은 2013. 8. 22.일 서울시 관악구 ○○동 ***-**-****호 지상 건물의 증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취득세 000,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5

대수선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1조

☐ 지적사항

- ▲▲▲과 대수선 건축물 취득세 부과담당 총 ○명은 2012. 1월부터 2015. 9월 까지 대수선 관리부서(□□□과)로부터 대수선 사용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서울시 관악구 ●●동 10**-*호에 대한 취득세 0,000,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건 취득세 0,000,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6

위법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1조

☐ 지적사항

- ▲▲▲과 위법 건축물 취득세 부과담당 총 ○○명은 2014. 11월부터 2015. 10월 현재까지 서울시 관악구 ○○동 14**-**호에 대한 취득세 000,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건 취득세 0,000,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7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적사항

- ▲▲▲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담당 총 ○명은 서울시 관악구 ●●동 ■■3길7 ●●●●●어린이집(○○○)에 지역자원시설세 00,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건 000,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8

대수선 건축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32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제5조

☐ 지적사항

- ▲▲▲과 대수선 건축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담당 총 ○○명은 서울시 관악구 □□동 8**-*외 1(●●● 외 3)에 등록면허세 00,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9

가설 건축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32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제8조

☐ 지적사항

- ▲▲▲과 가설 건축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담당 총 ○○명은 서울시 관악구 ●●동 6** ◇◇건설(주)에 등록면허세(면허) 00,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건 000,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1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부과 징수규칙」 제8조

☐ 지적사항

- ▲▲▲과 등록면허세 부과담당 총 ○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면허부여 부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하여 ㉠㉠㉠ 등 △명에 대해 총 ○건 00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부과)

2016 감사사례집

11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

☐ 지적사항

- ▲▲▲과에서는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 시가표준액 산출 오류로 취득가액(공급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으로서 취득세 00,000원 과다 징수하였고,
- 이전등록 차량의 취득세 부과시 신고가액(매매금액) 00,000,000원을 전산입력 과정에서 0,000,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인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으로서 취득세 000,000원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5. 동 행정 종합감사 분야

2016 감사사례집

5. 동 행정 종합감사 분야

감사사례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62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 준수	63
3. 공공요금 지출 처리 소홀	64
4. 직원 급량비 지급 방법 부적정	65
5. 시간외근무수당 산출 부적정	66
6.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관서 미 통보	67
7. 지출 및 지급원칙 위반	68
8.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68
9. 회계서류 작성 소홀	70
10. 회계서류 구비 소홀	71
11.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 공개	72
12. 예산과목 기준 적용 부적정	73
13.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74
14. 자율방범대 순찰 근무일지 작성 소홀	75
15. 물품검수조서 작성 소홀	76
16.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소홀	77
17. 계약절차 미 준수	78
18.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79
19. 시설공사 4대보험료 적용 확인 소홀	80
20.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미 작성	81

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82
22. 주민등록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	83
23.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기간 미 준수	84
24. 가족관계등록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85
25. 인증기 수입금 일일결산 부적정	86
26.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관리 소홀	84
27.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 부적정	88
28. 인감증명발급 시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소홀	89
29.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작성내용 확인 소홀	90
30.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수입증지 관리 부적정	91
31. 인감서면신고 접수·처리 부적정	92
32. 인감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93
33. 자활근로자 임금(월차수당) 과다 및 과소 지급	94
34. 민원사무처리 규정 미 준수	95
35. 청소년증 발급업무 소홀	96
36.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업무 소홀	97
37. 장애인등록신청 업무 처리 소홀	98
38. 사무전결규정 미 준수	99
39. 사례관리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100
40. 자치회관 강사료 지급 부적정	101
41. 주민자치회관 기금 지출관리 소홀	102
42. 자치회관 물품관리 소홀	103
4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소홀	104
4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업무 처리 소홀	105
45. 무단투기 위반자 의견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106

46.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소홀		107
47.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 처리 부적정		108
48.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부적정		109
49.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 통지서 수령증 관리 소홀		110

2016 감사사례집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예규)」

☐ 지적사항

- ○○동은 2013. 7월에서 2013. 10월까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야근이나 비상근무 노고에 대한 격려에 해당하지 않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환송 회식비용으로 총 ○건 000,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으며,
- ▲▲동은 2014. 2월에서 동년 8월까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야근이나 비상근무 노고에 대한 격려에 해당하지 않는 전출직원 격려 등으로 총 ○건 000,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 준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적사항

- ▲▲동은 내방민원접대용 차 구입, 접대용 도기 구입 등 총 〇〇건 0,000,000원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으며,
- ■■동은 내방민원 접대용 커피 및 음료, 소모품 구입,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등 총 〇〇건 0,000,000원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고,
- ▼▼동은 야간근무 직원 격려, 소속직원 생일축하 화환 구입, 새마을부녀회 격려 등 총 〇〇건 0,000,000원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

공공요금 지출 처리 소홀

☐ 관련규정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 지적사항

- ○○동은 2014. 4월분 전화요금을 납부기한인 2014. 4. 25.일까지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23일을 지연하여 2014. 5. 19.일에 무통장입금 처리하였으며, 연체료 000원은 2014. 5월 요금에서 예산으로 집행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동은 2013. 7. 2.일 2013. 6월분 ◎◎◎문고 인터넷요금 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건에 대해 요금납부 기한을 도과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재정상 시정(환수)

2016 감사사례집

4

직원 급량비 지급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적사항

- ○○동은 2013년 을지훈련 비상소집 급량비 00,000원, ▲▲동은 2013. 7월부터 2014. 6월까지 민방위 비상소집 교육에 따른 급량비 등 총 ○○건 0,000,000원, ■■동은 2013. 5. 14.일 남현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급량비 등 총 ○건 000,000원, ▼▼동은 2013. 5. 8.일 2013년 동 순회 청소 급량비 등 총 ○○건 0,000,000원을 현금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5

시간외근무수당 산출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적사항

- ○○동 등 4개 동은 2013. 6월부터 2015. 8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기본 시간)을 착오 계산하여 과다·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추가지급)

2016 감사사례집

6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관서 미 통보

☐ 관련규정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58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6월부터 2013. 11월까지 복합청사 개청식 현수막 제작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 등 총 ○건 0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합계표 미 제출하였으며,
- ▼▼동은 2014. 2. 27. 동청사 화장실 배수관 수리공사 비용으로 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합계표 미 제출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7

지출 및 지급원칙 위반

☐ 관련규정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6. 3.일 주민간담회 실시를 위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처리하는 등 총 ○건 000,000원에 대해 법인카드 결제일 이전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소 2일에서 최대 38일간 결제일을 도과하여 결제계좌로 입금하였으며,
- ■■동은 2013. 5. 31.일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등 총 ○건 000,000원에 대해 최소 8일에서 최대 179일간 결제일을 도과하여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하였고,
- ▼▼동은 2013. 6. 3.일 야간근무 직원 간식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000,000원에 대해 법인카드 결제일을 총 11일 도과하여 결제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8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관련규정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 「지방재정법」 제7조

☐ 지적사항

- ▲▲동은 2014. 1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3. 12. 11. 현안업무 간담회 비용 등 총 ○건 000,000원을 2013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2014. 1. 28.일 2014년 예산으로 회계연도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9

회계서류 작성 소홀

☐ 관련규정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46조, 제148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건에 대하여 지출일자 및 지급명령번호, 원인행위부 미기재, 날인누락, 지급결의서에 담당주사 및 동장,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누락 등 회계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 ▼▼동은 2013. 12월부터 2015. 4월까지 지급결의서에 팀장·동장 결재누락, 지급명령번호 미기재, 날인누락 등 총 ○○건에 대하여 회계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0

회계서류 구비 소홀

☐ 관련규정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55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계약직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당월 지급조서를 구비하지 않고 총 ○건 0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1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 공개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적사항

- ○○동은 2014. 12.월 「○○동 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주방용품 구입」 등 총 ○건의 물품구입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 ▼▼동은 2013. 7. 29. 「◆◆경로당 김치냉장고 구입」등 총 ○건에 대한 구입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2016 감사사례집

12

예산과목 기준 적용 부적정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 지적사항

- ▼▼동은 2015. 2. 4. 무선주전자를 00,000원에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3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 관련규정

- 「2014 및 2015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계획」

☐ 지적사항

- ○○동은 자율방범대로부터 제출받은 운영비 정산서류 중 2014. 3월부터 2015. 12월까지 순찰 자동차 수리비 총 ○건 0,000,000원의 사용에 대해 차량수리내역서를 구비하지 않고 정산보고 하였으며,
- ▼▼동은 2014. 3월부터 2015. 12월까지 ▼▼1자율방범대 2/4분기 운영비 정산서류에 3/4분기 사용 영수증 총 ○건 000,000원의 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4. 3. 31. ■■구 ●●동 (주)①①①유통에서 000,000원 지출 등 총 ○○건 0,000,000원에 대해 사용내역서 미 구비 및 관외 지역에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보고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4

자율방범대 순찰 근무일지 작성 소홀

☐ 관련규정

- 「2014 및 2015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계획」

☐ 지적사항

- ○○동은 2013. 11월부터 2015. 9월까지 순찰 근무일지에 총 ○회 지구대장 미 경유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5. 4/4분기 순찰 근무일지를 감사일 현재까지 미 작성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 ▲▲동은 2013. 6월과 2013. 11월에 월 ○○회 이상 순찰한 근무일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 ■■동은 2014. 8월부터 2015. 12월까지 순찰 근무일지에 총 ○○회에 걸쳐 지구대장 미 경유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 ▼▼동은 2013. 5월부터 2013. 12월까지 ▼▼1자율방범대 및 ▼▼2자율방범대로부터 정산서류를 받으면서 미 순찰 총 ○회, 근무일지 지구대장 미 경유 총 ○○회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4. 4/4분기(10월) ▼▼1자율방범대로부터 순찰 근무일지를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받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5

물품검수조서 작성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27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11. 29.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지급」 지출품의시 물품검수조서에 계약일자, 납품기한, 검사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총 ○건에 대해 물품 검수조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 ▲▲동은 2013. 5월부터 2014. 11월까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급」 지출품의시 물품검수조서 작성시 분임물품출납원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등 총 ○○건에 대해 직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6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소홀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지적사항

- ○○동은 2014. 11. 17. 계약상대자(●●●●엔지니어링)와 0,000,000원의 「○○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원상복구 공사」를 집행하면서 총 ○건의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동은 2014. 3. 17. 계약상대자(◇◇◇)와 000,000원의 「동청사 창고 이동식 선반 공사」 집행 등 총 ○건의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동은 2014. 3. 5. 계약상대자(■●■이엔지)와 000,000원의 「관수경로당 보일러 누수탐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7

계약절차 미 준수

☐ 관련규정

-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

☐ 지적사항

- ■ ■ 동은 2013. 6. 4. 계약상대자(■■■■트레이딩)와 0,000,000원 상당의 「직원식당 주방용품 구매」등 총 ○건을 시행하면서 내부품의서(서류 미첨부)없이 지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8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년 「동청사 창고 공사」등 ○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공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 하자검사를 미 실시하였으며,
- ▼▼동은 2013년 「▼▼동 자치회관 지붕 방수공사」 등 ○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공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 하자검사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19

시설공사 4대보험료 적용 확인 소홀

☐ 관련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6. 19.일 “■■■■종합건설”과 계약(계약금액 00,000,000원)을 체결하여 2013. 6. 26. 준공처리한 「▼▼동 자치회관 지붕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내역에 계상된 산재보험료 000,000원 및 고용보험료 00,000원에 대하여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0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미 작성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은 2013. 10월부터 2015. 9월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 외 6명에 대하여 번호 조립부에는 소인하였으나 번호 부여대장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 외 4명에 대해서는 성명(한글 또는 한자) 미기재, 부여사유 미기재, 부여일자 누락 사실이 있으며,
- ■■동은 2013. 7월부터 2015. 1월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 외 4명에 대하여 번호 조립부에는 소인하였으나, 번호 부여대장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및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 지적사항

- ○○동은 2015. 4. 10. ○○○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신청 사유로 분실을 기재하였음에도 수수료를 면제 처리하는 등 2015. 4월부터 2015. 9월 기간 중 총 ○건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적정 처리하였으며,
- ▲▲동은 2015. 1. 6. ●●●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유를 분실로 기재하였음에도 수수료를 면제처리 하는 등 2015. 1월부터 2015. 12월까지 총 ○건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추징, 환급),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2

주민등록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 지적사항

- ▲▲동은 2014. 12. 5, 2014. 12. 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 신고한 ○○○ 외 1명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기간 착오로 총 0,000원(총 부과금액 0,000원)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하였으며,
- ▼▼동은 2013. 5. 31. 재등록 신고한 ○○○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신고 지연기간 산정 착오로 0,000원을 과소 부과하는 등 2013. 5월부터 2015. 10월까지 총 ○건에 대하여 00,000원의 과태료를 과다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급, 추징)

2016 감사사례집

23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기간 미 준수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주민등록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은 2015. 4. 9. ●●● 외 3세대에 대한 직권조치(2015. 3. 31.)사실을 공고하면서 공고기간을 2015. 4. 9일부터 2015. 4.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14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등 2015. 4월부터 2015. 12월까지 총 ○건의 직권 조치 결과에 대한 공고 시 공고기간을 미 준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4

가족관계등록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 관련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85조,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 지적사항

- ■ ■ 동은 2013. 9. 27. ○○○의 사망신고를 수리하면서 비동거친족(●●●)에게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00,000원을 착오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급)

2016 감사사례집

25

인증기 수입금 일일결산 부정정

☐ 관련규정

-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9월부터 2014. 1월까지 총 ○건을 1~2일 지연 입금하였고, 2013. 9. 27. 일일결산 시 결산증빙자료(일일전표, 카드영수증, 결손증지, 납입영수증)를 누락하는 등 총 ○○건의 인증기 수입금에 대한 일일결산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6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관리 소홀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9월에 전입한 세대 중 □□□ 외 118세대에 대한 전입신고 사후 확인서를 최소 27일에서 최대 44일 지연 출력하여 통장에게 송부하였고, 2013. 9월부터 2015. 12월까지 전입한 ○○○ 외 64세대에 대한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거주여부 확인을 누락하였으며,
- ■■동은 2013. 5월에 전입한 259세대의 통장사후확인서에 담당자 날인을 누락 하였고, 2013. 6월과 2013. 12월 중 전입한 세대 중 ㉠㉠㉠ 외 45세대(6월 : 35세대, 12월 : 11세대)에 대한 사후확인서를 최소 10일에서 최대 32일 지연 출력하여 통장에게 송부하였으며, 2014. 6월부터 2014. 7월까지 전입한 ◎◎◎ 외 14세대에 대한 사후확인서에 거주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7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 부적정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은 2015. 1월부터 8월까지 ○건의 인감증명 발급 시 발급 대상 본인의 서명을 누락하였고, 또한 ○건은 인감증명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인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누락하여 인감증명발급대장 작성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동은 2014. 4월부터 2015. 2월 기간 중 ■■■ 외 9명에게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면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였고, 2014. 8월부터 2015. 12월 기간 중 총 ○,○○○건의 인감증명 발급에 대하여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8

인감증명발급 시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소홀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은 2013. 9월부터 2014. 2월 기간 중 ○○○ 외 ○○명에게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면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 ▼▼동은 2013. 9월부터 2014. 2월 기간 중 ◇◇◇ 외 ○○명에게 인감증명 발급 시 발급대상 본인의 서명을 누락하였고, ■■■ 외 ○○명에게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면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는 등 총 ○○건에 대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29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작성내용 확인 소홀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 ▲▲동, ■■동, ▼▼동은 2013. 9월부터 2015. 12월 기간 중 ○건의 인감증명 발급 시 워드로 작성된 위임장을 수리하였고, 위임일자가 누락된 ○○건의 위임장과 위임사유가 누락된 ○○건의 위임장을 보완 조치 없이 수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0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수입증지 관리 부적정

☐ 관련규정

- 「인감증명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은 2015. 1월부터 2015. 11월 기간 중 총 ○건의 인감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과다·과소 인증처리 하였고, 2014. 10월부터 2015. 7월 기간 중 총 ○건의 인감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 수입증지 첩부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2일까지 지연 처리하였으며,
- ▼▼동은 2013.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의 인감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 당일에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최대 12일 이전 사전 첩부 및 최대 14일 지연 첩부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급, 추징),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1

인감서면신고 접수·처리 부적정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은 2015. 9. 4. ■■■■■의 인감서면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사유 : 해외출국), 신고서 상에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과 인감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 조치 없이 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 ▼▼동은 2013. 10. 8. ■■■의 인감서면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면신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증명서류(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인감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접수 처리하였고, 2013. 10. 10. ■■■의 인감서면 신고를 처리하면서 서면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고서 상에 보증인의 인감 및 인감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 조치 없이 신고서를 수리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2

인감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지적사항

- ○○동은 2013. 5월부터 2015. 6월 기간 중 인감관리대장의 확인 및 보완이 완료된 대장의 비고란에 담당자의 날인을 누락하였으며,
- ▲▲동은 감사대상 기간(2013. 5월~2016. 2월) 동안 전산출력용 인감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비치하지 않는 등 인감관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동은 2013. 9. 13.부터 2014. 12. 31. 기간 중 인감관리대장 비고란에 담당자 날인을 누락하였고, 이 중 2014. 7월부터 2014. 12월 기간 동안은 일일출력하지 않고 1개월분을 한 번에 출력하는 등 인감관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동은 감사대상 기간(2013. 5월~2016. 2월) 동안 전산출력용 인감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비치하지 않는 등 인감관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3

자활근로자 임금(월차수당) 과다 및 과소 지급

☐ 관련규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적사항

- ○○동은 2015. 10월 자활근로자 인건비 산출 보고 시(○○○○과) 경조사 휴가 사용자인 ○○○에 대하여 실비가 포함된 금액을 보고하여 0,000원이 과다 지급 되었으며, 지급부서의 잔여월차 확인요청중 2015. 6월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회의 월차수당이 발생한 ㉠㉠㉠의 월차에 대한 확인 누락으로 월차수당 00,000원이 과소 지급되었으며,
- ▲▲동은 잔여 월차가 없는 자활근로자의 2015. 6월, 12월 월차사용을 승인하여 월차수당을 과다(00,000원) 지급하였으며, 당월 월차를 사용한 자활근로자의 인건비 산출시 월차수당을 미산정하여 보고하거나 월차 사용일을 근무일로 잘못 보고하여 임금이 과다(○천원)지급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추가지급, 환수)

2016 감사사례집

34

민원사무처리 규정 미 준수

☐ 관련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적사항

- ○○동은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하면서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 등록등본을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5

청소년증 발급업무 소홀

☐ 관련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적사항

- ○○동은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에 대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별지 1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를 받지 않고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하였으며,
- ■■동은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에 대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별지 1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를 받지 않고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6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업무 소홀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적사항

- ○○동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거나, 장기이식에 따른 장애등급 변경으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소멸된 장애인에 대하여 변경발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동은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에게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거나(○건), 행복 e음에 실제 발급된 표지와 다르게 발급사항을 입력(○건)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및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7

장애인등록신청 업무처리 소홀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적사항

- ■■동은 2015. 5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등록 신청 업무를 하면서 ○○건 중 ▲▲건에 대하여 신청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8

사무전결규정 미 준수

☐ 관련규정

-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 지적사항

- ■ ■ 동은 2012. 12월부터 2013. 7. 2.까지 동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업무를(○○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39

사례관리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관련규정

-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적사항

- ○○동은 사례관리 종결자 ○○○에 대해 사후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 등 3인에 대하여 1차 모니터 상담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할 2차 모니터 상담을 누락하거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였으며,
- ▲▲동은 사례관리 종결자 ●●●에 대해 사후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2인에 대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 1차 모니터 상담을 하거나, 2차 모니터 상담을 누락하였으며,
- ■■동은 사례관리 종결자 ●●●에 대해 6개월 경과 후 1차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차 모니터 상담은 누락하였으며,
- ▼▼동은 사례관리 종결자 ●●●에 대한 사후관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0

자치회관 강사료 지급 부적정

☐ 관련규정

-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지적사항

- ○○동은 성인영어교실 및 댄스스포츠 강사료 지급시 계산오류 및 시간당 최저 3만원 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래교실 강사료 지급시 시간당 00,000원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자치회관 강사료를 과다과소 지급하거나 계산오류로 소득세를 과소공제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추가지급),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1

주민자치회관 기금 지출관리 소홀

☐ 관련규정

-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 「관악구지방재정법」 제47조,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 지적사항

- ▲▲동은 척사대회 특별공연 지원금 등 ○건에 대하여 계좌이체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음악 저작권료를 납기내에 지출하지 않아 2014. 1, 3월 총 000원의 연체료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자치회관 운영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동은 자치회관 램프 및 민원접대용 커피구매 등 총 ○○건을 지출하면서 대금을 정당한 채주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카드 사용 후 자치회관 운영 담당자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2

자치회관 물품관리 소홀

☐ 관련규정

- 「구 방침(△△△△과-21***, 2012.*.**.)」 ‘자치회관 운영기금 구입 물품 관리계획’

☐ 지적사항

- ■■동은 2013년부터 2015년에 구매한 로봇청소기, 서예용 책상 등 4종의 물품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의2
- 「지방재정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 및 제54조

□ 지적사항

- ○○동은 2013. 4월부터 2015. 11월까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업무를 수행하면서 □□□ 등이 신청한 ○○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에 대해 1일에서 최대 103일까지 지연 처리하였으며,
- ■■동은 2014. 2월부터 2014. 12월까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업무를 수행하면서 ◆◆◆ 등이 신청한 ○○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에 대해 2일에서 최대 22일까지 지연 처리하였고, 2014. 1월부터 2015. 9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본인)가 아닌 ■■■ 등 3명이 신청한 취소신청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수수료 반환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 ▼▼동은 2015. 8월부터 2015. 12월까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업무를 수행하면서 ■■■■ 등이 신청한 ○○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에 대해 3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지연 처리하였고, 2014. 3월부터 2015. 6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본인)가 아닌 ■■■■ 등 8명이 신청한 취소신청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수수료 반환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업무 처리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9조

□ 지적사항

- ○○동은 2014. 1월부터 2015. 11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상금액보다 과다 ○건·과소 ▲건 소인하였으며,
- ▲▲동은 2014. 6월, 2015. 7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상금액보다 과다·과소 각 ○건을 소인하였으며,
- ■■동은 2014. 2월부터 2015. 6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인터넷결재(카드) 처리된 ○건 소인 처리하였고, 정상금액보다 과다 소인하였고,
- ▼▼동은 2013. 8월부터 2016. 1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업무를 수행하면서 ◎◎◎ 등 50명이 제출한 배출신고서를 분실하여 소인처리(○○명)하지 않거나 소인을 중복(○○명) 처리하였고, ○○○ 등 21명을 정상수입보다 과다 ○, 과소 ○○건 소인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환수, 환급),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5

무단투기 위반자 의견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 시 처리 요령 통보」

□ 지적사항

- ○○동은 2014. 7월부터 2015. 8월까지 ●●●이 제출한 의견진술에 대한 부과 결정 이후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았고, ●●● 외 1명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사실조사 및 내부결재 누락,
- ■■동은 2015. 4월부터 2015. 10월까지 ■■■ 등 29명이 제출한 의견진술에 대한 부과 결정 이후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았고, ▲▲▲ 등 3명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내부결재 누락,
- ▼▼동은 2015. 8월부터 2015. 10월까지 ▲▲▲ 등 2명이 제출한 의견진술에 대한 부과(경감)결정 이후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았고, ☆☆☆ 등 2명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구두진술 내용 기록 및 내부결재를 누락하는 등 무단투기 위반자 의견접수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6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소홀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 시 처리 요령 통보」

☐ 지적사항

- ○○동은 2014. 5월부터 2015. 12월까지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 등 30명에 대하여 방문통보 및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외 대상에서 임의 제외,
- ■■동은 2014. 2월부터 2014. 5월까지 □□□ 등 9명에 대한 무단투기 위반자 사전통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사전통지서 전달불가(폐문부재) 사유로 과태료 부과외 대상에서 임의 제외,
- ▼▼동은 2015. 3월부터 2015. 12월까지 ■■■ 등 7명에 대한 무단투기 위반자 사전통지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나 과태료 부과외 대상에서 임의 제외하는 등 무단투기 위반자 사전통지서 송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7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 처리 부적정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지적사항

- ○○동은 ★★★ 등 4명에 대해서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민방위대 자체 교육 훈련을 인정 처리하였으며,
- ▲▲동은 2013년~2014년 2년간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을 민방위대 자체 교육 훈련을 인정 처리하였고, ♠♠♠ 등 2명에 대하여 기초생활(차상위)수급 정지되었음에도 2014년 자체교육 인정 처리하였으며,
- ▼▼동은 ○○○ 등 3명에 대해서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민방위대 자체 교육 훈련을 인정 처리하였고, 2012년 9월 이후 소멸일자가 입력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자체교육인정 처리 중인 ◎◎◎에 대하여 확인 절차없이 2015년 교육을 제외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8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부적정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지적사항

- ○○동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당해연도 해외체류 경험이 없는 ○○○ 등 9명을 3개월 이상 해외체류의 사유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하였고,
- ▲▲동은 2014년 교육대상자인 □□□(197★.▽▽.△△)의 면제신청 및 사실 확인 없이 2014년 7월 14일 ‘기타사유’로 면제 처리하였으며, 민방위업무담당 ▲▲▲ 외 1명은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 외 6명을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사유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동은 2014. 7월부터 2015. 8월까지 유예면제일 기준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해외체류 중 훈련일이 포함되지 않은 ●●● 등 17명과 면제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 등 2명을 3개월 이상 해외체류의 사유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감사사례집

49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 통지서 수령증 관리 소홀

☐ 관련규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2015년 비상대비 인력동원 통지서 배부」

☐ 지적사항

- ○○동은 2015년도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자 12명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서 받은 수령증 일체(○○매)를 감사일 현재 분실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6. 제도개선·수범사례



2016 감사사례집

6. 제도개선·수범사례

1. 300만 원 이하 부서별 일상경비 교부 집행	113
2.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표준 계약서 마련	114
3. 기간제근로자 출장부 서식 개선	115
4. 금연과태료(수시) 미 부과분 정리	116
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내용 개선	117
6.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개선	118
7. 법원 환급금[인지대·송달료] 월별 세입조치	119
8. 건축물 신고(허가) 접수 관리 부서로 매월 자료 요청하여 세원누락 방지 방안 강구	120
9.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시 과세표준 확인방법 개선	121
10. 통합민원창구 운영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	122
11. 작은 도서관 내 인터넷 재가입시 재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 안내	123
1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전산화 작업 구축 검토	124
1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효율적 인력관리	125
14.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승소로 예산절감 기여	126
15.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세원 발굴	127
16.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28
17. 「위기가정! 신고함」 설치·운영	129
18. 「하나로(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130
19. 은빛책나래(경로당 활성화 사업) 실시	131
20.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지역발굴 협약 체결	132

2016 감사사례집

1

300만 원이하 부서별 일상경비 교부 집행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 현황 및 문제점

- ○○○○과 소속 직원 1명이 일반지출, 일상경비, 계약, 봉급(수당) 업무 전담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있으며, 일시에 업무가 집중되면 지출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예산 집행이 어려움
- 또한, 소액의 물품 구매·제조 등의 지출을 집행부서가 아닌 관서 회계주무부서에서 처리함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이 지출 적정성 등 업무 책임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300만 원 이하 소액의 물품 구매·제작 등은 각 과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회계주무담당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세출예산 집행을 최소한의 부분만 원활한 지출행위를 위해 분산함으로써 시기적절한 업무 처리 도모
- 지출행위에 대한 부서 담당자의 책임성 부여

2016 감사사례집

2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표준 계약서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병가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해야 함에도 명시된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병가에 따른 임금 지급 근거가 부족하고,
- 기본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보건소 내 또는 각 부서별로 표준 근로계약을 마련
 - 병가 사용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명시
 -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포함

☐ 기대효과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명확한 임금 기준 마련
-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일관된 업무 처리 가능

2016 감사사례집

3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세원 발굴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조례 제23조(보수의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행정자치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보건소에는 3개 과(○○행정과, △△보건과, ◎◎과)에 총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지침과 관련하여 직원 관리 및 임금을 지급하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일률적인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관용차량 사용 여부에 따라 여비를 달리 지급하고 있음에도,
-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출장부가 일관된 서식이 없고, 관용차량 사용 여부란이 없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여비 산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개선 요구사항

- 여비 지급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출장부를 부서별로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되, 관용차량 사용 여부란을 포함한 서식으로 변경

☐ 기대효과

- 각 부서별로 일관성 있는 출장부를 사용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2016 감사사례집

4

금연과태료(수시) 미 부과분 정리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하여 사무실 근무자와 연락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단속과정에서는 신분증 미소지로 허위 인적사항을 구두로 알려주거나, 불응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음
- 현장 단속 시 PDA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하면 성명이 틀려도 입력되어 신고분이 부과되나 수시분 과태료 부과 시 주민망을 조회하면 확인 불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미 부과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는 과태료로 인해 체납분이 누적될 소지가 많음
- ○○○○과에서는 2014년부터 금연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부정확한 인적자료로 부과하지 못한 과태료는 2015년 4월 부과분까지 총 ○○건 0,000,000원임

□ 개선 요구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15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하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부과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내부결재 후 과태료 자료를 정리하되, 최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정리 자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필요

□ 기대효과

- 흡연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부득이한 과태료 부과 건을 정리함으로써 실제로 부과되지 못하는 허수를 줄이고,
- 정확한 과태료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2016 감사사례집

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내용 개선

☐ 관련규정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

☐ 현황 및 문제점

- 모자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로 선천성 대사질환 환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적용 불가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생애 최초 선천성대사 질환으로 확진 후 발생한 당해연도 또는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등록시점 이후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필요 ⇒ 보건복지부에 건의

☐ 기대효과

-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천성대사질환 의료비의 실질적인 지원 및 민원해소

2016 감사사례집

6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개선

☐ 관련규정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2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및 종사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변동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사유로는 2012년 보건소 종합감사 시 제도개선을 진단방사선 기기 관리를 위해 시행한「진단용 발생장치 정기점검 안내」를 실시하면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안내하였고,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음

☐ 개선 요구사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한 의료기관에 법정 의무사항(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격년제 건강진단 및 피폭선량 측정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
- 주기적인 방사선장치 정기검사 안내 발송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및 교육,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준수사항 명시

☐ 기대효과

- 의료기관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사항 숙지 및 피폭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
-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의료 환경 조성

2016 감사사례집

7

법원 환급금[인지대·송달료] 월별 세입조치

□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으로 인지대·송달료 납부시 소송수행자(공무원·변호사)가 사비로 입금하고 정당 채주가 아닌 이에게 확정금으로 지급함
- 소송 종료후 법원에서는 환급금(인지대·송달료) 잔액을 소송수행자(공무원·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입금사실을 구 본청 소송업무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법무법인의 경우 환급건수가 많아 확인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미반환한 사례가 다수 있음
- 또한 소송수행자(공무원·변호사)의 반환의지가 부족하고 환급계좌 미기재시 관리은행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청 누락
-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법원 환급 인지대·송달료 세입예산 손실의혹」 사건 조사 후 ○○○○○과에서는 법원 환급금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환급계좌를 개설(2014. 12월)하여 전 부서 소송수행자 및 우리구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통보함

□ 개선 요구사항

- 환급계좌로 입금되는 법원 환급금(인지대·송달료) 월별 세입조치 시행

□ 기대효과

- 소송 총괄부서에서 통일된 환급계좌로 법원 환급금 일괄 관리함으로써 세입예산 누락 사례 방지

2016 감사사례집

8 건축물 신고(허가) 접수 관리부서로 매월 자료 요청하여 세원누락 방지 방안 강구

☐ 현 황

- 가설·대수선·증축 건축물 신고(허가) 접수 : △△과
- 현행 △△과에서 건축물 신고(허가) 접수후 ▲▲1, 2과로 통보
- 취득세 부과 : ▲▲1과
- 면허세 부과 : ▲▲2과

☐ 문제점

- △△과에서 가설·대수선·증축 건축물 신고내용을 부과부서에 미 공유(통보)로 과세 누락 발생
- ▲▲1, 2과는 △△과로부터의 통보 자료에 의존하여 과세하므로 자료 미 통보시 과세 누락

☐ 개선 요구사항

- ▲▲1, 2과는 매월 말 기준으로 건축물 신고(허가) 내역을 건축과에 요청하여 과세 누락 발생을 미연에 방지

☐ 기대효과

- 세원 누락방지 및 적시 과세로 민원발생 최소화
-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추가발생 방지로 납세자 세부담 감소

2016 감사사례집

9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시 과세표준 확인방법 개선

□ 현 황

-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시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해당항목이 없어 과세표준 적용시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로(취득가액) 과세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증빙서류 중 법인장부가격(법인인 경우)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증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과에서는 취득자의 신고로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 및 통합처리 민원으로 타구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간이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문제점

- 구조변경으로 인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미부과 대상으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의 시가표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변경의 경우 간이영수증 등의 인정은 가격조작 및 정비사업자의 세금포탈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과세표준 확인방법 확장여부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질의회신을 통해 문제해결 도출

□ 기대효과

-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가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자치구간 실무가 통합되어 납세자의 세금 탈루 방지 효과 및 구 세입증대 방안 마련

2016 감사사례집

10 통합민원창구 운영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

☐ 현황

- ○○동은 2015. 1. 1.부터 통합민원창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내방 민원 중 즉시 발급 민원서류 등(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인이 통합민원창구에서 긴 시간 대기함

☐ 문제점

- 즉시 발급 민원서류 신청차 방문한 민원인이 통합민원창구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 등 표출사례 증가

☐ 개선 요구사항

- 통합민원창구 전 동 확대 실시로 민원인의 불만사항 감소 및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치행정과

☐ 기대효과

- 민원인이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구정의 행정만족도 향상 및 직원의 친절한 업무처리 효과 발생

2016 감사사례집

11

작은 도서관 내 인터넷 재가입시 재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 검토

☐ 현 황

- 동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20개동 운영)
- 작은 도서관에는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신사와 3년 약정으로 계약되었으며, 통신비 중 매달 일정금액이 계약요금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음

☐ 문제점

- 인터넷 약정 후에 담당자가 변경되면 최초 약정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약정 기간 만료 시 이를 간과할 가능성 높음
- 약정기간 만료 후 기존 통신사와의 재약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최초 계약금액을 계속 지불해야되는 문제점 발생

☐ 개선 요구사항

-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에 반기마다 인터넷 재약정 계약 체결시 기본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공문 시행

☐ 기대효과

- 매달 지급하는 통신비의 기본요금 할인 혜택으로 예산 절감

2016 감사사례집

1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전산화 작업 구축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작성 후 동 청소담당에게 제출
- 담당직원은 배출신고서 접수 후 구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전산시스템에 접속 후 신고 내역을 입력하고 전산물을 출력하여 수입증지를 인증처리하며,
-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수수료 수입증지 인증처리 방법이 동 담당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됨

☐ 전산출력물에 인증하는 사유

-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 인증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산출력물에 신고내역이 그대로 등재되고 품목별 가격도 각기 표시되어 신고서 대신 전산출력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개선 요구사항

- 홈페이지에 탑재된 대형폐기물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존의 배출신고서(별지제8호 서식) 내용을 추가하여 전산 출력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 후 신고서를 출력함으로 민원인의 수기작성 번거로움 해소 및 원스톱 청소행정 구현

2016 감사사례집

1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효율적 인력관리

□ 추진방향

-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 생산적 인력관리를 통한 인력운영비의 예산 절감 및 방만한 예산운영 지양
-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시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추진현황

- 2013년 기간제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부 전환(○○명)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 치매지원센터 ○명
- 2015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체 전환(▲▲명)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 치매지원센터 ○명
- 추진내용
 - 기간제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여 인력운영비 예산절감
 - 2015년도 예산 편성 시 관악구(◇◇명 : 000,000천 원)는 타 구(◇◇명 : 000,000천 원)와 비교하여 인력운영비 00,000천 원을 절감하여 운영

□ 추진성과

- 재정자립도 및 인력이 비슷한 인근 자치구에 비하여 인력운영비가 현저히 감소
- 청년 인력의 채용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및 확보
- 시간선택제임기제 운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2016 감사사례집

14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승소로 예산절감 기여

☐ 사건개요

- 사 건 명 : 부당이득금(201*나*****)
- 원 고 : ○○○ 외 1명
- 청구취지 : ■■동 5**-** 도로 408.9m²를 관악구에서 부당하게 점유·사용하므로 부당이득금 청구
- 소 가 : 000,000천원

☐ 추진현황

- 2013.01.** : 소송제기
- 2013.10.** : 1심 판결선고(원고 승)
- 2013.11.** : 우리구 항소제기
- 2014.07.** : 항소심 승소(사유 : 원고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찾아내 증거로 제출)
- 2014.09.** :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201*카확*****)
- 2015.01.** : 소송비용확정결정 판결(0,000천 원)
- 2015.03. : 소송비용 회수완료

☐ 추진성과

- 패소 시 부담할 부당이득금 000,000천 원과 2심 판결일까지 월임료 00,000천 원 합계 000,000천 원의 구비 예산절감에 기여함

2016 감사사례집

15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세원 발굴

□ 추진배경

- 자산운용사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0%를 감면하나, 2013.10.25. 안전행정부의 『미등록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감면 여부』 질의회신 결정에 따라 미등록 기구의 취득세 감면 조사 후 추징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 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대상 법인 세무조사 추진

□ 추진내용

- 취득자 : 주식회사 ○○은행(위탁자 : ■■■자산운용-주)
-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로 판단한다는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감면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및 부동산 취득일자 조사

□ 추진성과

- 취득세 등 추징세액 : 0,000백만 원(추징완료)
- 세수증대 및 부당 감면신청 사전차단 효과

2016 감사사례집

16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추진배경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를 기점으로 기능 향상으로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 확대 시행
- 2013년 개발 및 시범운영 완료 후 2015년 전지역 대상으로 전면시행
- 관내 21개동에 설치된 CCTV중 289대를 활용하여 영치활동 연중 활용

□ 추진내용

- 2013.05.01 : 문제차량 영치시스템 개발완료
- 2013.11.15 : 『2013. 관악 창의우수사례 선발』우수상 수상
- 2014.01.01 : 성공적 시범운영 후 우리구 전지역 대상 시스템 운영
- 2014.11.05 : 2014년 지방세발전 포럼(서울시 대표 발표)
- 2014.11.12 : 문제차량 영치시스템 저작권 사용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 추진성과

- 문제차량 영치시스템 활용으로 세입증대 달성

(단위 : 대, 백만원, %)

구 분	영 치 대 수				영 치 체 납 금 액			
	영치합계	현장영치	시스템활용	활용비율	금액합계	현장영치	시스템활용	활용비율
영치실적	8,407	7,518	889	10.57	4,115	3,491	624	15.16

- 운영기간 : 2013년 5월 ~ 2015년 8월

- 영치실적 = 서울시체납영치 + 징수촉탁영치

- 문제차량 영치시스템 저작권료 수입 발생

- 본 시스템의 전국 확산으로 우리구와 공동개발업체와의 저작권료 계약체결
- 공동개발업체 관련 매출액의 5%를 저작권료 명목으로 분기별 수수(세외수입)
- 2015년 9월말 현재 누계액 : ○○백만 원 수수료 수입 발생

2016 감사사례집

17

「위기가정! 신고함」 설치·운영

□ 추진배경

- 로스쿨제도와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선발인원 감소로 인한 원룸이나 고시원의 월세비 인하로 인해 전국적인 저소득층 유입 현상 발생
- 출소자, 정신질환자, 실직 또는 일용직 근로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상담 및 긴급지원, 후원 요청 등 복지욕구 급격히 증가
- 고시원, 원룸이 밀집된 동 특성상 저소득 이웃 주민들에 대한 관심 필요

□ 추진현황

- 추진기간 : 2016. 4월 ~ 현재
- 추진방법
 - 위기가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밀집지역 ○○곳에 「위기가구 신고함」설치
 - 복지통장이 신고함을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전달
 - ○○○○○○○○협의체 위원과 동행 방문 상담 후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만원 (후원: △△△△위원회)

□ 추진성과

- 어려운 이웃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유발
-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사전지원체계” 구축

2016 감사사례집

18

「하나로(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동 특성상 정신질환자 증가로 자타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유입 대폭 증가
- 위기잠재력 가구의 사전보호를 통해 위기상황 대비 지원가능체계 구축 필요

☐ 추진현황

- 보건+복지 통합한 하나로 서비스 지원
- 추진기간 : 2014. 2월 ~ 현재
- 운영내용 :
 - 보건소 사례관리사와 사회담당 공무원이 동 주민센터 상담실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정신건강상담을 실시
 - 종합복지상담사가 개별적 상담 실시를 통해 보건 및 복지 욕구 종합적 파악 후 서비스 제공

☐ 추진성과

(단위: 건)

총 상담건수	정신보건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복지대상자 신청	성금품 지원
220	55	65	100

2016 감사사례집

19

은빛책나래(경로당 활성화 사업) 실시

☐ 추진배경

-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책 배달 및 책 읽어주기 사업 진행
- 독서문화 정착, 세대 간 소통증진, 건전한 어르신 여가생활 육성
-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어르신 복지 향상 기여

☐ 추진내용

- 자원봉사자가 관내 2개 경로당에 주 1회 이상 신청도서 직접 배달
 - ○○, □□ 경로당
-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연계를 통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

☐ 추진성과

- 2016. 2월부터 현재까지 도서 ○○권 배달 및 수거 완료
- 2016. 4월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회원 등이 방문하여 월 2회 책 읽어주기 및 대화 진행

2016 감사사례집

20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지역발굴 협약 체결

□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자원 발굴 필요
- 민·관 협력체계 수행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정 상시 발굴 체계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 추진내용

- 관내 종교시설·금융기관 등의 지속적 후원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시설 : 신림중앙교회
 - 협약일시 : 2015. 5월
 - 협약내용 :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시 적극 신고 안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기관(교회, 신협 등) 대상으로 복지교육 실시 예정

□ 추진성과

-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10여개 지역단체와의 후원협약 체결 예정(2016. 12월 중)

7. 관련 규정

7. 관련 규정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5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감사 규칙 14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1988. 05. 01 규칙 제013호)

개정(1993. 12. 27 규칙 제171호)

개정(1994. 07. 26 규칙 제198호)

개정(1998. 04. 10 규칙 제312호)

개정(2004. 12. 10 규칙 제496호)

개정(2005. 11. 30 규칙 제512호)

개정(2007. 07. 05 규칙 제545호)

(일부개정) 2007.10.25 규칙 제 548호

(일부개정) 2009.03.12 규칙 제 572호

(일부개정) 2009.06.25 규칙 제 579호

(일부개정) 2010.06.10 규칙 제 602호

(일부개정) 2011.08.11 규칙 제 62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2.03.29 규칙 제 640호

(일부개정) 2014.03.13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14.11.27 규칙 제675호

(일부개정) 2016.12.01 규칙 제7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② 삭제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그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와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4.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및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③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재직중에 비위 등으로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নিউ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② 삭제

제10조 삭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감사 규칙

제정(1988. 05. 01 규칙 제012호)

개정(1989. 04. 17 규칙 제049호)

개정(1998. 05. 11 규칙 제316호)(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제안규칙등)

전문개정(1999. 02. 20 규칙 제340호)

(일부개정) 2000.04.25 규칙 제 396호

(일부개정) 2009.10.29 규칙 제 58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감사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11.08.11 규칙 제621호

(일부개정) 2015.12.03 규칙 제693호 타규칙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구금고 및 국·시·구비 보조단체·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계획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이라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 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복감사 지양) 구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감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하여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0조(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구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일상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부서에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심의·심사한 때에는 일상감사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1항 규정의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감사결과와 처리

제17조(감사결과와 보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18조(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적극행정 면책)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 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8 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대상 여 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와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 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고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2조(감사정보 관리)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의 대행) 구청장은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4급 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공무원

제27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8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2호서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담당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감사공무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
-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감사담당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실 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제30조(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담당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
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 감사사례집

- 발행처 : 관악구청
- 발행일 : 2016. 12월
- 주 소 :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 편 집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 879-5103

이 사례집은 2015년 ~ 2016년도 우리구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례를 수록하였기에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